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2. 1. 10.(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2022. 1. 9.(일) 정오 12:00 이후	총 4쪽 (붙임 2쪽 포함)	
배포일자 2022. 1. 7.(금)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인정숙 과 장 (02-2100-6341) 정진현 서기관 (02-2100-635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미정 부 장 (02-3479-5510) 한시아 부 원 (02-3479-5622)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3인 기준 월 2,516천 원→월 3,146천 원으로 완화 -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 중인 ㄱ씨에게 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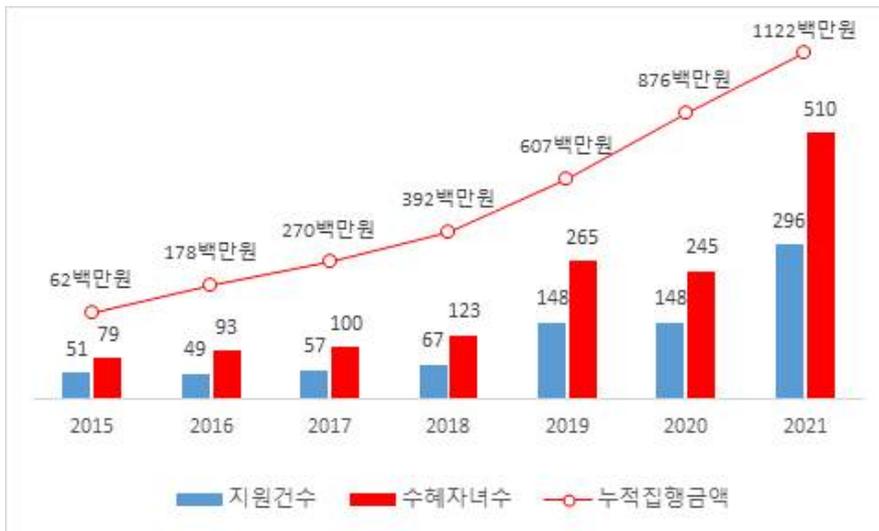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원)로 완화

-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자료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개요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지원금액 고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예산 : 1,601백만원
- 지원 기간 : 9개월
 ※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지원 종료 후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 요건 : 1·2·3호는 모두 충족, 4·5·6·7·9호는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3.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제9조제1항 제1호(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5.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6.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7.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8.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9.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실적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총계	'15	'16	'17	'18	'19	'20	'21
지원현황	지원건수	816	51	49	57	67	148	148	296
	지원자녀수	1,415	79	93	100	123	265	245	510
	지원금액	1,122	62	116	92	122	215	269	246

□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상담(1644-6621, 1번)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5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2018년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금액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 - 60호)”는 폐지한다.